

도시관리계획(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96호(2015. 9. 24.)로 결정(변경)된 『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』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16일

송 파 구 청 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」 내 잠실동 186-7호 건축물 최고높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사항임.

II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-	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잠실동, 올림픽로 주변	367,687 (355.2)	-	367,687 (355.2)	서고 제397호 ('84.7.4)

※ ()는 금회 변경대상지(송파구 잠실동 186-7호) 면적임

III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: 변경

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2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건축물의 용도(변경없음)

나. 건축물 개발밀도(건폐율, 용적률, 높이): 변경

1) 건폐율 계획(변경없음)

2) 용적률 계획(변경없음)

3) 높이계획: 변경

위치			계획내용		비고
			기정	변경	
이면부	용도지역 존치시	10m 도로변	20m 이하	22.99m 이하	잠실동 186-7호에 한함
		6m 이하 도로변	15m 이하	-	

○ 변경 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송파구 잠실동 186-7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고높이 완화 (20% 이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물 최고높이 20% 이내 완화

IV. 관계도면: 변경없음(계재생략)

※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47-3002)에 비치하고 있으며,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 및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